KB 주택전세자금대출 (은행재원 협약보증)

주택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대출



대출자격

-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 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
 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*하고.

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

- *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
- 2.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* 이내인 경우
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 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

대출한도

-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(채권 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)
-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
- * 다만,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,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.

대출기간

- 대출기간: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(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)
- 상환방법: 일시상환, 혼합상환
 ※ 혼합상환 (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+일시상환): 분할상환 금액은 대출금액의 5%이상(단,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이상, 원단위)
 - ※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

전세자금대출 | 영업점신청

상품안내

상품특징

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%까지 한국주택금 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

대출신청자격

-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
 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*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
 - *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계산
 - 2.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 이내인 경우
 -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

대출금액

-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)
-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
- * 다만,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,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.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대출기간 :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(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)
- 상환방법: 일시상환, 혼합상환
 ※ 혼합상환 (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+일시상환):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%이상(단,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, 원단위)
 - ※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

대출대상주택

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독/다가구주택, 주거용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
 ※ 전세(예정)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(압류, 가압류, 경매 등)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

대출신청시기

- 신규임차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[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(묵시적 갱신)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]

대출실행(지급) 시기

- *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(입주예정일)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
- 계약 갱신: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, 전세 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

금리 및 이율

대출금리

- (1) 기준금리: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또는「신잔액기준 COFIX」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 - (2) 가산금리: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 - (3) 우대금리: 최고 연 1.4%p 우대
 -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고 연 0.9%p
 -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실적 우대 : 연 0.1%p ~ 연 0.3%p
 - :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/60/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
 - 급여(연금)이체 실적 우대 : 연 0.1%p ~ 연 0.3%p
 -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(3건 이상) : 연 0.1%p
 - : 아파트관리비/지로/금융결제원 CMS/펌뱅킹
 -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: 연 0.1%p
 -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: 연 0.1%p
 - :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
 - ※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 -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(연 0.2%p),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(연 0.3%p)
 - ※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,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.
 - (4) 최종금리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신용등급·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 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중도상환수수료

-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59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최장 3년까지 부과)
 -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(0.79%) 적용
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에 관한 사항

- 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*)
- *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- ※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,0%p
- 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-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-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: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※ "개인채무자보호법"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(약정금액 기준,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 기준)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상기 '② 항'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.

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

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대출계약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 영업점(콜센터 포함), 모바일 앱,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위법계약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이용아내

담보

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

부대비용

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① 인지세: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 하	5천만원 초과 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 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 (각각 3만5천 원)	15만원 (각각 7만5천 원)	35만원 (각각 17만5천 원)

② 보증료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

- 임차보증금의 0.02% ~0.4%

※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"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보증료는 1년 단위(또는 일시납)로 고객이 부담(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)
-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대출상화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
 ※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- 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
- 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
- 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- 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
- 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
 -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기한연장 관련 안내

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,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(기한연장, 재대출, 대출상환 등)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단,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.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, 콜센터,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.

유의사항 및 기타

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
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신 용정보 관리규약』에 따라 "연체정보 등으로"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-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"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 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 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
 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(☎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.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2025.01.13 ~ 2026.06.30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구분	변경전	변경후	적용여부
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(2017.07.1 4)	* 해당사항없음	* KB 스타뱅킹 이용고객 (0.1%p) * 적립식예금보유고객 (0.1%p)	미적용
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(2017.07.1 4)	* KB 스타뱅킹이용고객(0.1%p) * 적립식예금보유고객(0.1%p) * 스타클럽고객(골드스타이상)(0.1%p)	* 운용중단 * 운용중단 *현행 유지	미적용
우대금리 추가 (2017.07.1 4)	* 해당사항없음	* 부동산전자계약우대 (0.2%p) *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 애인우대(0.1%p)	미적용
대출연체 가산금리 변경 (2018.04.2 7)	*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 자율 적용 - 1개월 이하: 연 6% - 3개월 이하: 연 7% - 3개월 초과: 연 8%	*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 가산이자율: 연 3%	적용
대출상환방법 (2018.10.1 5)	* 일시상환 적용 * 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	* 일시상환	미적용
대출신청자격 (2018.10.1 5)	*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 억원(지방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 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 되는 고객	*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 억원(지방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 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 되는 고객 *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	미적용

		이내인 고객(단, 주택보유 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 산 연 소득 1억원 이하)	
영업점 우대금리 (2018.10.1 5)	* KB스타클럽(본인 은행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): 연 0.1%p * 우량등급고객(CSS 1~6 등급): 연 0.1%p *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 금리: 연 0.1%p	* KB스타클럽(본인 은행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): 연 0.1%p * 우량등급고객(CSS 1~6 등급): 연 0.1%p * KB부동산리브온: 연 0. 1%p	미적용
중도상환 수수료율 (2019.04.1 7)	* 0.7%	* 0.6% ©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경우 0. 7%적용	적용
대출신청시기 (2019.08.3 0)	*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 터 3개월 이내 * 계약갱신 : 계약갱신일 (계약서 작성일 기준)로부 터 3개월 이내[임대차계약 을 자동기한연장(묵시적 갱신)한 경우에는 연장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]	*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 터 3개월 이내 * 계약갱신 : 계약갱신일 (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 일 기준)로부터 3개월 이 내[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 연장(묵시적 갱신)한 경우 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]	미적용
대출신청자격 (2019.11.1 1)	*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 억원(지방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 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 되는 고객 *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)	*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 억원(지방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「주 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 되는 고객 *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	미적용

		고객. 단,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)	
대출상환방법 (2020.06.0 5)	* 일시상환	* 일시상환 * 혼합상환(일시상환+원 (리)금균등 분할상환)	미적용
대출신청자격 (2020.07.1 0)	*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 주택가액이 9억원이하인 고객.단, 보유주택 9억원초 과인 경우라도 실수요증빙 시 예외취급가능)	*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(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)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 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이거나, 2020.7.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 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. 단, 실수요증 빙시 예외취급가능)	미적용
대출상환방법 (2020.10.3 0)	* 일시상환 *혼합상환(일시상환+원 (리)금 균등 분할상환) 분 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10%,20%,30% 중 선택	* 일시상환 *혼합상환 (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+일시상환): 분할 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%이상(단, 일시상환금액 은 최소 10만원이상, 원단 위)	적용
우대금리 (2020.11.0 6)	* 최고 연1.5%p 우대 ① (생 략) ② 영업점 우대금리 : 최고 연0.3%p - KB스타클럽(본인 은행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) : 연 0.1%p - 우량등급고객(CSS 1~6 등급) : 연 0.1%p - KB부동산리브온 : 연 0. 1%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(연 0.2%p),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(연 0.1%p)	* 최고 연1.2%p 우대 ① (현행과 같음) (삭 제)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(연 0.2%p),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(연 0.1%p)	기한연장 시 적용

대출계약철회 권 제외 대상 (2021.03.2 5)	*대상	*비대상	없음
우대금리 (2021.09.2 9)	* 우대금리: 최고 연1.2%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: 최 고 연 0.9% -신용카드실적(0.10~0.3 0%p) -급여(연금)이체(0.30% p) -스타뱅킹실적(0.10%p) -자동이체실적(0.10%p) -적립식예금실적(0.10% p)	* 우대금리 : 최고 연1.0%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 고 연 0.7% -신용카드실적(0.10~0.3 0%p) -급여(연금)이체(0.30% p) -스타뱅킹실적(0.10%p)	미적용
대출신청시기 (2021.10.2 7)	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 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 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- 계약갱신 : 계약갱신일 (계약서 작성일 기준)로부 터 3개월 이내 [임대차계 약을 자동기한연장(묵시적 갱신)한 경우에는 연장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]	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 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. 1.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 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.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 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	미적용
대출신청자격 (2022.01.0 3)	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(지방 3억원) 이하인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 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 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 택금융신용보증서 가 발급 되는 고객	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(지방 5억원) 이하인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임 차보증금의 5% 이상을 계 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 택금융신용보증서」가 발급 되는 고객	적용
우대금리 (2022.01.0 3)	* 우대금리 : 최고 연1.0%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 고 연0.7%p - 신용카드실적(0.10%p	* 우대금리 : 최고 연1.2%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: 최 고 연0.9%p - 신용카드실적(0.10%p	미적용

	~0.30%p) - 급여(연금)이체(0.30% p) - 스타뱅킹실적(0.10%p)	~0.30%p) - 급여(연금)이체(0.30% p) - 스타뱅킹실적(0.10%p) - 자동이체실적(0.10%p) - 적립식예금실적(0.10% p)	
대출신청시기 (2022.03.3 0)	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 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☞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. 1.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 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.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 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	1.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 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 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 월 이내 2. 계약갱신 : 계약갱신일 (계약서 작성일 기준)로부 터 3개월 이내 [임대차계 약을 자동기한연장(묵시적 갱신)한 경우에는 연장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]	미적용
우대금리 (2022.07.2 5)	* 우대금리 : 최고 연1.2% p우대 ①(생략)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(연 0.2%p),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(연 0.1%p)	* 우대금리 : 최고 연1.4% p 우대 ① (현행과 동일)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(연 0.2%p), 주택자금대 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(연 0.3%p)	미적용
대출최고한도 (2022.10.1 1)	최고 2억2천2백만원	최고 2억2천2백만원(채권 보전조치 시 4억4천4백만 원) *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	미적용
대출신청자격 (2023,03,0 2)	-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포함)가 합산한 주택보 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(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) 이내인 고객(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 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이거나, 2020.7.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 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. 단, 실수요증 빙시 예외취급가능)	-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 자 포함)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 이내인 경우 * 보유 중인 주택이 2020. 7.10일 이후 투기지역 또 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 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 외. 단, 실수요 요건을 증빙 하는 경우 신청 가능	적용

대출신청자격 (2024.09.3 0)	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 상을 지급한 경우	- 1.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(그 외 지역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*하고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 *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 증금 계산	미적용
중도상환수수 료 (2025.01.1 3)	-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 율(0.6%) x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당초 대출일로부 터 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(0.7%) 적용	- 중도상환수수료: 중도 상환원금 x 수수료율(0.5 9%) x 잔존일수 ÷ 대출기 간(최장 3년까지 부과) ☞ 단,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 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 수료율(0.79%) 적용	미적용

필요서류

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
- *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
-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(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)
-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
- 주민등록표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-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.